



Wade Weems 변호사, Anti-Corruption Report와 함께 Herbalife의 해외부패행위방지법 합의 분석

2020 09 18

수 년에 걸친 Herbalife Nutrition Ltd.의 중국 내 부패행위방지법 위반행위 수사는 Herbalife와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법무부의 합의로 끝을 맺었습니다. 상하이에서 활동하는 전직 법무부 검사인 코브레 & 김의 Wade Weems 변호사는 *Anti-Corruption Report*와 함께 이번 합의를 분석하였습니다.

수사에 따르면 Herbalife는 직접판매 허가를 취득하려고 중국 내 당국자에게 뇌물을 증여한 혐의가 있었지만 미국 정부의 수사에 협조하였습니다. 만약 협조를 거부했더라면 수사는 “시간이 더 걸리고, 더욱 대립이 심했을 것이며, 어쩌면 (회사에게) 비용도 더 들었을 것”이라고 Wade Weems 변호사는 말합니다. 부패행위방지법 위반 수사에 협조하면 수사의 범위를 좁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새로운 혐의를 적발할 수도 있는 정부의 광범위한 독자적 수사를 유발하는 대신 특정 혐의에” 중점을 두기 때문이라고 Wade Weems 변호사는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문제가 된 뇌물 수수는 외국 정부가 부당한 시장 장벽을 극복하려는 수단”이었으므로 기소유예를 포함한 이번 합의가 장래의 범죄를 완전히 제지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Wade Weems 변호사는 전망합니다. 문제의 근원은 제도적입니다. “사건의 핵심이 무역 장벽이며, 범죄행위가 이러한 장벽을 극복하여 시장에 접근하려는 동기로 이루어졌을 경우 제가 생각하기에 이러한 단속조치는 제지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전체 기사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